

기업투자 애로 및 부처 검토의견(사전검토과제)

2006. 3

산 업 자 원 부

사전 검토과제 목록

No.	건의과제명	관계부처
1. 수도권 투자 활성화		
1-1	과밀억제지역내 공장移轉跡地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	건교부
1-2	자연보전지역내 사무실 및 창고 증축규제 완화	산자부
1-3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	건교부
1-4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선	환경부
1-5	수도권내 연수원 신증설 허용	건교부
1-6	수도권내 연구소 신축시 과밀부담금 경감	건교부
2. 산업단지 투자관련 제도 개선		
2-1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 지정	산자부
2-2	자연녹지지역내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완화	건교부
2-3	산업단지 지정관련 절차 간소화	건교부
2-4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문제 개선	건교부
2-5	산업단지내 건축물 신·증축시 도시계획세 등 면제	행자부
2-6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시도로 보수 공사비 부담 경감	건교부
3.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3-1	대기업계열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 폐지	재경부
3-2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폐지	재경부
3-3	설비투자 활성화 위한 리스기준 등 개선	재경부
4.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4-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재경부
4-2	일정목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재경부
4-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재경부
4-4	국내 제작 곤란한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재경부
4-5	소자업체 자가수리용 부분품 세율 시정	재경부
4-6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재경부
4-7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재경부
4-8	철강 및 석유화학 기초 원자재 관세인하 등	재경부
4-9	신기술 최초 기업화를 위한 투자 지원	재경부
4-10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건교부
4-11	민자도로사업 통행량 부가가치세 면제	재경부
4-12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재경부

No.	건의과제명	페이지
5.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5-1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 적용	재경부
5-2	관광호텔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 편입	산자부
5-3	호텔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혜택 확대	재경부
5-4	관광호텔 외국인력 고용 허용	노동부
5-5	관광시설관련 수입 기자재 도입시 관세 경감	재경부
6. 문화·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6-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재경부
6-2	문화콘텐츠제작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재경부
6-3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조합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재경부
6-4	특수목적회사 설립요건 완화	재경부
6-5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재경부
7. 환경 관련 투자활성화		
7-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환경부
7-2	연구개발설비 가동관련 법규 차등적용	환경부
7-3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입법 재검토	환경부
7-4	배출시설 신고의무 개선	환경부
7-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기간 단축	환경부
8. 물류·유통산업 투자 활성화		
8-1	국도 38번 조기 완공 지원	건교부
8-2	대규모 유통점포 출점 규제 완화	규개위
8-3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유통기업 부담 최소화	건교부
8-4	유통기업의 전기요금 산업용 적용	산자부
8-5	개발제한지역내 택배터미널 건축 허용	건교부
8-6	물류시설 투자를 위한 자원조달 방안 및 지원책 다양화	재경부
8-7	물류센터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행자부
8-8	SOC 및 물류시설 투자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	재경부

No.	건의과제명	페이지
9. 대 · 중소기업 협력강화		
9-1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재도입	재경부
9-2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 등	재경부
9-3-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창업기업 투자확대 등)	중기청
9-3-②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투자주식의 손금인정범위 확대)	재경부
10.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10-1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의 일몰제 적용 폐지	재경부
10-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재경부
10-3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재경부
10-4	산업기반자금 및 산업기술개발자금 예산증액	산자부
10-5	부품 · 소재 핵심 생산설비 기술개발자금 지원	산자부
10-6-①	CT(콤비나트) 기술개발 지원	산자부
10-6-②	석유 대체물질 기술개발 지원	산자부
11. 기업도시 건설 원활화		
11-1	기업도시 접근도로 건설 지원	건교부
11-2	기업도시개발 출자금의 출총제한 적용제외 확대	건교부
11-3	초 · 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허용	건교부
11-4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 투자자금 20%이상 확보시점 연기	건교부
11-5	등록체육시설과 숙박 및 주거시설 설치 허용	건교부
1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공정위
13, 기타 자금지원 · 규제완화 등		
13-1	섬유산업 구조혁신 지원	산자부
13-2	대학 · 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산자부
13-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개선	건교부
13-4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확대	산자부
13-5	LNG 복합발전소 용량요금(CP) 상향조정	산자부
13-6	조선소 입지난 해소	건교부
13-7	환경 · 안전 관련 분산된 감독기관과 중복된 규제 및 관리	규개위

1.1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

□ 건의요지

- 수도권 소재 대기업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하도록 조치
-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시 종전대지의 20~30%만 공장 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허용
- * 용도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의 부담비율을 종전 부지면적의 10~20% 수준 이내를 부담하게 하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수도권안의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해당지역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지자체 고유 권한사항이며,
 - 공공시설용지 부담비율을 낮추거나, 공공시설용지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분을 국고보조하는 것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

1-2. 자연보전지역내 사무실 및 창고 증축규제 완화

□ 건의 요지

- 자연보전지역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

□ 검토 의견 : 수용(법령 개정 추진)

-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산정시에 제조시설외에 부대시설인 사무실·창고 면적까지 합산

* 자연보전권역 : 가평 · 양평 · 여주 · 이천 · 광주 및 남양주 · 용인 · 안성 일부

- 이로 인해 실제 제조시설 건축가능 면적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

* '03.6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에 사무실과 창고면적을 제외

【참고】 자연보전지역 공장건축 가능면적(산집법시행령 별표3)

- ▶ 공업지역 : 중소기업도시형 공장 신·증설(3천㎡ 이내)
- ▶ 기타지역 : 현지근린·건축자재업종·첨단업종공장 신·증설(1천㎡ 이내), 중소기업 도시형공장 증설(3천㎡ 이내)
- ▶ 산업단지 : 공업지역,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 공장은 면적제한 없음)

-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 ⇒ 환경·과밀과 무관한 사무실·창고 면적 제외

* 현재는 광주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중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의무실시 변경예정(가평 · 남양주 · 양평 · 여주 · 용인 · 이천 포함)

- 금년 5월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 ①) 개정추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지역균형발전 기획관실 지역투자입지과	김희석사무관	02-2110-5302

1-3.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

□ 건의요지

공장입지시 수도권 심의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 심의내용 변경시에도 재심의 절차 생략

□ 검토의견 : 부분수용(일부 개선추진중)

-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공장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대기업공장 증설 심의 등에 대해,
 -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한 경우 원칙상 한 번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입지에관한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있으나,
 - 다만, 사업의 연관성 결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음
- * 공장총량 심의 : 3년마다 이루어지는 총량설정 등에 대한 심의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개별사업 심의와 성격이 전혀 다름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가 적용이 되고 있으나,
 -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원칙상 받아야 할 것임
- * 운영규정 제4조 :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경미한 사항변경(사업규모의 10/100~20/100)에 대하여는 건교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심의를 갈음

1-4.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선

□ 건의 요지

- '07.7월부터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등이 미확정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업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시행

□ 검토 의견 : 기 수용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03.12월) 및 시행('05.1월)
 - 당초 특별법 제정 논의시(2003) 총량관리제를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시기를 2년 6개월 유예
→ 이에 따라 '07.7월부터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게 되었음
- 산업계의 총량제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시범사업 실시
 - 1차로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 150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밀조사하고, 3회의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04~'05)
 - 2차로 23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05~'06)
- 향후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단위량 등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 마련시 산업계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를 해 나갈 계획임
 - ※ 총량할당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에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환 경 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환경사무관 김 영 민	2110-7928

1-5. 수도권내 연수원 신·증설 허용

□ 건의요지

기업내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시설 부족 및 한시적인 교육 특성 등을 고려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연수원 제외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연수시설의 규제목적은 상주인구보다는 연중 계속되는 연수에 따른 유동인구의 상주화로 인한 인구유발요인을 억제하는데 있음
- 특히 연수시설의 경우 수도권 입지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크지 않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등 지방화시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시 당분간 연수시설 규제의 완전배제는 곤란
- 또한, 연수시설에 대해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존에 건축된 연수시설의 사용상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음
- *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기존 연수시설의 20/100, 자연보전권역은 기존 연수시설의 10/100 범위안에서의 증축은 허용

1-6. 수도권내 연구소 신축시 과밀부담금 경감

□ 건의요지

- 과밀부담금으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를 저해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범위를 조정하여 기업 연구소 신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완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과밀부담금은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억제 및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94년에 도입·시행중인 경제적 규제임
 - 과밀억제권역중 과밀정도가 심한 서울지역에 한하여 부과
- * '04년말 현재 인구집중도 : 수도권 48.0%(서울 21.0%)
- 과밀부담금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부과되는 것으로 연구소 등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부과를 달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또한, 용도에 따라 부과를 달리할 경우 용도변경 등에 의한 악용으로 인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해짐

2-1.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 건의 요지

-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는 울산 및 여천 국가산업단지에 비하여 도로, 항만, 용수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

□ 검토 의견 : 수용(적극적 협조)

- 울산 및 여천 국가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도로 및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므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타당성은 인정
 -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90년대 초반 삼성토탈과 현대석유화학(現 롯데대산유화, LG화학)이 공장을 건설하여 조성된 단지
 - * 산업입지법 개정(안) 입법예고('06.1.20) :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산업단지 개발 유도(건교부 공고 2006-19호)
- 산업단지 지정은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인 충청남도 소관사항이며, 두기관이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요건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며,
 - 인프라(도로 등)와 관련한 사항들은 해당 관계부처(건교부 등)와 계속 협의할 계획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기초소재산업과	김종범	2110-5642

2-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완화

□ 건의요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중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또는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계획된 지역에서는 민간산업단지 지정허용

□ 검토의견 : 검토

-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이나 제반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시 발전방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인 경우에도 공업지역 용도로 부여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개발
- 민간기업이 개발할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한 것이나
 - ‘05.12.26 산업입지개발에관한 통합지침 제정시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중에서 경계가 정해진 시가화 예정용지도 산단 개발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 현재 추진중인 법령개정후 개정관련 하위지침 개정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 본 사안은 ‘05.8.30 산업단지규제개선방안 확정 시 총리께서 투기를 우려하여 보류시킨 사항임

2-3. 산업단지 지정절차 간소화(지자체 이양)

□ 건의요지

-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산업단지 개발(중앙→지자체)
- 특히 이미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추가 확장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 요망

□ 검토의견 : 개선 추진중

- 현재 추진중인 산업법 개정안에 국가, 지방등 지정권자 분류체계를 「일반」, 「도시첨단」, 「농공」 등 기능별 분류체계로 전환하면서,
 - 지정권을 시·도지사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정 시장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토록 할 계획임
- * 대통령령 : 지정시장은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의 시장, 기초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지정면적 15만㎡이하로 검토 중
- 기 지정된 단지의 추가 확장은 신규로 지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행정처리기간 단축은 곤란
- * 행정처리기간은 대부분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기간」 등이 장기간 소요됨

2-4.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문제 개선

□ 건의요지

- 산업단지 개발시 의제처리대상 범위 확대로 기업편의 제고
 -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인허가 의제, 국토의이용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의제 등 추가

□ 검토의견 : 개선 추진중

- 본 사항에 대하여는 '05.8.30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제처리를 대폭 확대(소하천법을 포함한 8개법률 9개과제) 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 현재 규개위 과제를 포함하여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등 제반절차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 심의를 요청중임
- * 19개법률 36개 → 33개법률 60개로 확대
- *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된 경우 2년 이내 하도록 되어있으나, 산업단지 실시 계획이 자주 변경되므로 완료시점에서 고시토록 제도개선

2-5. 산업단지내 건축물 신·증축시 도시계획세 등 면제

□ 건의 요지

- 산업단지내 건축물 신증축시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감면 신설 건의

□ 검토 의견 : 수용불가

-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신증축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경감(수도권외 지역 면제)하고 있으며,
 - 2005.1.5. 그 경감대상도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음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특정한 행정서비스(소방,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감면대상 세목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 금년도 우리부에서는 일몰기한(2006.12.31.) 도래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 전면 재정비시 기존에 감면되던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는 과세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있으므로,
 - 산업단지 등 건축물의 신증축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감면 신설 건의는 수용불가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최미정사무관	02-2100-3925

2-6.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시도로 보수 공사비 부담 과중

□ 건의요지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간선도로 보수를 여수시에서 회피하여 산단내 입주업체의 도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지자체에서 비용부담 요망

□ 검토의견 : 적극 검토(예산처 반대)

- 도로법상 시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이므로, 여수 산단 내 시도로의 보수비용을 여수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 재정제약에 의해 지자체에 의한 단지내 간선도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에는 준공된 단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금번 산업법 개정 추진 시 준공된 단지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려 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반대

3-1. 대기업 계열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폐지

□ 건의 요지

- 대기업계열 금융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최대출자자인 사모펀드(PEF)는 계열로 편입한 회사의 주식을 5년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며,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5

- PEF의 투자자금 평균 회수기간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5년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규정은 대기업계열 증권회사의 영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기업계열 PEF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필요

□ 검토 의견 : 수용불가

-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는 PEF를 통한 재벌의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사모M&A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것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증권제도과	홍성기사무관	2110-2435

3-2.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제한 폐지

□ 건의 요지

-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 초과출자를 금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1조의 4]

⇒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이며, 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동일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제한 규정을 폐지

□ 검토 의견 : 수용불가

- 동일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제한규정은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활용하여 PEF출자를 통한 우회적인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사모M&A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것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증권제도과	홍성기사무관	2110-2435

3-3. 설비투자 활성화 위한 리스기준 등 개선

□ 건의 요지

- 중소기업이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생산설비 등의 리스시 각종 투자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 검토 의견 : 수용불가

-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는 현재도 투자세액공제 가능
-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운용리스와 같이 소유권 취득 없이 리스료만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 적용 불가
- ◇ 금융리스 : 일정기간 차용인이 리스료를 지급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리스로서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중에는 해약할 수 없으며,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 유지, 수선 등의 관리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함
- ◇ 운용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의 유지·수선·보험료·조세공과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임대하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중 리스료를 부담하고 사용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4-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 건의 요지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로 환원 및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 검토 의견 : 추후 검토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여부 및 공제율 조정은 투자 동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에 결정

* 현재 2006.1.1~2006.12.31 투자분 7%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확대

- 관광이용시설업, 수도권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항만법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항만시설장비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는
- 해당 시설의 특성,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

*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별검토 필요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4-2. 일정목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 건의 요지

- 20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세액공제를 2년간 연장

□ 검토 의견 : 추후 검토

- 20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여부는
 - 금년 5월에 관련부처로부터 조세감면평가서 · 건의서 등을 제출받고
 - 각 제도별로 감면목적 달성여부, 투자세액공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 8월경에 결정할 예정

<참고> 20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

-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
-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 ③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 ④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 ⑥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소관부처	소관국 · 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4-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 건의 요지

-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중복지원배제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감면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유리한 감면제도를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R&D·사업·지방이전·구조조정 등 성장단계별로 34개의 우대지원 제도를 운용중으로 현재도 충분히 지원중임
-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기는 어려움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4.4. 국내 제작 곤란한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 건의 요지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 재검토
 - 관세감면제도 적용시한 무기한 연장
 - 감면율 확대 및 대기업차별 철회(관세감면율 50%로 통일)
 - *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동화첨단 방적설비는 감면율 상향 요청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동 관세감면제도는 '05.12.31 일몰로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제여건,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해 2년간 연장한 것으로,
 - 감면율은 단계적 인하를 통해 해당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향 조정하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한 것임
 - * 감면율 : 40% → 30%(단, 중소기업은 50%로 종전과 동일)
 -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 모두가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방적설비 특정산업에 대해서만 감면율 차별화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
- 향후 지속적으로 중장기 조세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다만, 진행중인 DDA협상 및 주요국과의 FTA협상 진척 등 관련 상황여건을 감안하여 성과분석 실시('07년 하반기)후 재검토 고려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성용욱	2110-2215

4.5. 반도체 소자업체 자가수리용 부분품 세율 조정

□ 건의 요지

- 세율불균형 관세감면(관세법 제89조) 적용대상 확대
 - 반도체 소자업체의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부분품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동 감면제도는 정보통신협정(ITA)등에 따라 부분품과 완제품 사이에 세율 불균형이 발생하는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부분품에 대한 역관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 해당관세율 : 완제품(0%), 부분품(8%)

- 반도체 제조용 장비업체 또는 수리업체*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동 업체가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등에 대해 관세감면(100%)

* 대상업체는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씨텍 등 중소기업으로서 '05년 반도체 장비부분품 감면실적은 152억원이었음

- 반도체 소자업체*의 자가수리용 부분품까지 감면대상 확대는 국내 중소장비·수리업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 소자업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동부아남반도체 등 대기업으로서 허용할 경우 연간 약 90억원가량의 감면혜택 추정

- 중장기 조세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성용욱	2110-2215

4-6.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건의 요지

- 창업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재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점을 감안하여 결손금도 발생 후 5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

	우리나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독일
이월공제기간	5년	5년	7년	20년	제한없음
부과제척기간(신고)	5년	5년	5년	6년	4년
(무신고)	7년	6년	7년	제한없음	10년
소멸시효	5년	5년	5년	10년	5년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시 막대한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

* 1년 연장시 예상 세수감소 효과('04년 기준) : 약 1조원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기업보다는 적자가 누적된 부실기업을 위한 제도인바
 - 막대한 세수감을 초래하면서까지 부실기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

- 우리나라와 같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가지는 국가는 이태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터키, 그리스 등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사무관 김건영	2110-2170

4-7.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 건의 요지 : 수용곤란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를 인하

□ 검토 의견

- 중소기업 최저한세(현행 10%)는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2004년에 기인하된 것으로 추가인하는 곤란
 - 법인세율 인하 : (15%, 27%) → (13%, 25%)
 - 최저한세율 인하(중소기업) : 12% → 10%
(대 기 업) : 15% → 13%(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 최저한세 제도는 다양한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과도한 조세감면으로 인한 과세불형평 방지하기 위해 제도임
- R&D세액공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동제도 적용시 최저한세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4.8. 철강 및 석유화학 기초 원자재 관세인하 등

□ 건의 요지

- 철강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 조기 무세화 및 할당관세 적용확대
- 납사, 프로판, 메탄올 등 석유화학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

□ 검토의견 : 추후 검토

- 관세율 조정문제는 경제발전 및 산업경쟁력 수준 등 장기적인 산업정책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제정책 수단으로
 - 아국의 기본관세율 체계는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유도, 개세부담원칙에 따라 기초 원재료에 대해서도 1~3%의 최저세율을 적용
- 당부는 그동안 기초 원자재의 가격 및 수급동향 등 단기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탄력관세(예: 할당관세 등) 운용으로 대처
 -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철광석·고철·선철 등 주요 철강 기초원자재 6개와
 - 고유가에 따른 기업 및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원유, 납사, 프로판 등 석유화학 기초원자재 9개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 철강 기초원자재의 경우 '05년에 비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감소 (14개→6개)한 이유는 주석괴 등 8개 품목의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중복지원이 되어 할당관세 적용요건에 부적합하였기 때문
- 앞으로 철강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 조기 무세화 및 관세인하 문제는 여타 기초원자재들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기본관세를 개편시 검토할 예정이며,
- 기초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 확대 문제는 향후 수입가격 및 수급동향과 국내 생산업체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말 할당관세 운용안 마련시 검토할 계획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강한석	2110-2221

4-9. 신기술 최초 기업화를 위한 투자 지원

□ 건의 요지

-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

□ 검토 의견 : 수용곤란(도입의 실익이 없음)

- 현재도 상용화설비등 기계장치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 세액공제(05년 10%, 06년 7%) 또는 R&D설비투자세액공제(7%)를 적용받을 수 있음
- R&D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가 R&D준비금 손금산입제도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임
- * R&D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실익이 없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4-10.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건의 요지

-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93년 도입된 교통세 및 교특회계는 아직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06년말 폐지예정
 - 교통세 및 교특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연한인 '19년까지 연장
- * 교통세법 및 교특회계법 기한연장을 위한 주승용·윤호중의원 발의안이 건교위 법안소위에 각각 계류 중

□ 검토의견 : 수용곤란(취지는 반영 노력)

- 교통세 및 교특회계가 그간 교통시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아직도 교통시설의 Stock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동의
 - 다만, '05.5월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서 교특회계를 폐지기로 한 것은 특별회계로 인한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해소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
- *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05.5) : 특별회계 19→11개, 기금 57개 →50개
- 앞으로 교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투자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
 -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시설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4-11. 민자도로사업의 통행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건의 요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정부대행단체로서 면세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건설단계에서는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를 부담(기부채납단계는 과세대상아님)하고 사용수익단계(통행료 수입)에서는 부가세 면제,
 - 반면 민자유치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건설단계와 기부채납단계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수익단계에서 부가세가 과세됨
- 민자도로의 건설 및 기부채납단계에서 막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수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 과도한 조세지원이 되어 타부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의 조세지원 불형평 문제 발생
 - 동 사업자는 사회간접시설의 사용수익에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조세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할인 등의 방법으로 이용객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타당

- 또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면,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고속도로이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예: 철도,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등 총32종)의 사용수익에 대하여도 부가세 면제 요구로 이어져 막대한 세수감소 발생 가능
- 참고로, 기본요금이 포함된 도공요금과 기본요금이 없는 민자요금의 km당 단순요금 비교는 곤란
- 도공요금은 건설원가 대비 78%수준이며 부가세가 없는 반면, 민자요금은 사업성격상 건설원가를 요금에 반영

<관련 법령>

□ 조특법§106①제6호(부가가치세 면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특령§106⑦제11호·40호(부가가치세 면제)

- 조특법§106①제6호의 정부대행단체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 제11호 :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제40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최영전	2110-2195

4-12.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건의 요지 :

-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 SOC채권 범위 확대(상환기간 15년이상 → 10년 이상) 및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06.12.31→'19.12.31)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장기 SOC채권 분리과세 혜택은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미약
 -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특정 고액재산가를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어려운 금융상품
 - 특히, 저율 분리과세되는 공모인프라 펀드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
 - 개인투자자의 유동자금은 인프라펀드를 중심으로 SOC 시설 투자로 유도하고 SOC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은 폐지
 - *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의 경우 다양한 소득계층의 투자가 예상되며 조달 자금 규모도 SOC채권보다 훨씬 클 전망
 - 비과세·감면 저축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 제도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배정훈	구내) 2166

5-1.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 적용

☐ 건의 요지

-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적인 적용
- 관광산업이 외화획득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산업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폐지하는 것은 타산업과 형평성 문제

☐ 검토의견 : 수용곤란

<소비지 과세원칙에 위배>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소비되는 수출재화에 적용하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예: 농어업용 기자재, 장애인용품 등)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국제적 과세기준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위배됨

<영세율 적용의 정책효과>

- ☐ '01년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관광호텔의 숙박요금만 상승하고 관광객 유치효과는 없음
 - 영세율을 폐지한 '05년의 외국인관광객은 오히려 6.3% 증가
- ☐ 관광수지는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의한 영향보다 한류 등 관광자원, 국제정세 등에 좌우
 -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세제지원보다 관광여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외화획득사업으로 수출과 동일하다는 주장>

☐ 그러나, 국내 호텔에서 외국인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의 수출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국내에서 제공된 숙박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

☐ 외화획득사업인 호텔용역을 수출로 보는 경우 외국인의 국내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

-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모든 행위가 외화획득으로서 수출에 해당

*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유흥장소 입장, 국내선 항공기 이용, 주류 소비 등에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

<조세지원의 형평성 문제>

☐ 호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예산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호텔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형평성 문제 야기

-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관, 여인숙 등 영세 숙박업소와의 과세상 차별 문제 발생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5급 이재목	2110-2193

5-2. 관광호텔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 편입

□ 건의 요지

-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은 '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에 광업, 제조업과 같이 관광 숙박업을 포함토록 개선

□ 검토 의견 : 수용 불가

-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6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음
 - 산업용 요금은 광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관광호텔은 "표준산업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어 일반용 요금 적용대상임
-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등 포함)의 외화획득분에 대해서 요금 특례규정에 따라 '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특례요금은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왜곡하고 음식점·운수업 등 타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는 문제가 있어 국회(이병석, 선병렬 위원 등)에서 특례규정 폐지 요구
- 국내관광객 사용분까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건설업, 정보통신업, 물류·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각종 전기소비자들의 산업용 요금으로의 변경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산업용 요금 적용에 따른 경감액 (약 8,300억원)은 전기요금 인상요인('04년 기준 약 3.6%)으로 작용하여 타용도(서민주택용, 일반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용이 불가
- 다만, 산자부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02.12)에 따라 산업용 요금과 일반용 요금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므로,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은 줄어들 것임
- '03.1.1 산업용 2.5% 인상, 일반용 2.0% 인하
- '04.3.1 산업용 동결, 일반용 3.5% 인하
- '05.12.28 산업용 2.4% 인상, 일반용 1.9% 인상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박태현	02-2110-5544

5-3. 호텔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혜택 확대

□ 건의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를 호텔산업 등의 관광산업에도 확대적용
 - 관광호텔 객실 개·보수 투자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허용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ERP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 관광호텔 객실의 개·보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은 곤란
-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숙박업의 경우 건축물 및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에어컨, 금고, 교환시설 등)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5-4. 관광관련 업종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



☐ 건의 요지

- 관광업 중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업종, 관광호텔 등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

☐ 검토 의견 : 추후검토

- '05. 3.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05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의 심의·의결결과 관광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관광호텔 종사원 수준의 외국어는 내국인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사유로 외국인력도입 업종에서 제외됨.
- 다만, '05. 3. 2 심의·의결 이후 업종별 인력수급상황, 내국인 대체가능성의 사정변화 등에 의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이삼근	502 - 9457

5-5. 관광시설관련 수입기자재 도입시 관세경감



□ 건의 요지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광산업 관련 놀이기종 등 장비 수입시 관세경감(조특법 제118조에 추가)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는 중장기 조세개편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어 있는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철도용품 및 신재생에너지물품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지를 할 목적으로 '07년말까지 일몰조항을 신설하였음('05년말)
- 특정산업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은 폐지되고, 기능별 감면지원(예:공장자동화물품)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역행
 - 유일한 특정산업 감면제도인 방위산업용품 감면도 '07.12월말 일몰시한을 설정하여 폐지예정
 - 특정산업에 대한 관세상 지원신설은 WTO보조금 협정 위배 소지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성용욱	2110-2215

6-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건의 요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으로 확대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현재도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등의 문화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 적용중
-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운영목적 및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 다른 법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것 보다 타업종과의 형평성, 재정현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 업종별로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문화산업에 대하여는 2004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적용 받도록 하고,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충분히 지원하고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6-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및 문화 콘텐츠제작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 건의 요지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을 포함

□ 검토 의견 : 추후 검토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서 문화사업의 경우도 적용가능함

<참고> 소비성 서비스업 (조특법 시행령 §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에 한함)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
3. 그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규칙§57)
 - 무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카지노업을 제외)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 기술개발 대상에 “문화콘텐츠 제작”을 포함하는 문제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 필요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6-3.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조합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건의 요지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 통해 창업자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대상 확대
 - (현행) 기관투자자 → (개정) 일반법인으로 확대
- * 건의취지 : 대기업 등 대형자본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유도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나
 - 예외적으로 '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관투자자(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가 창업투자 등의 목적으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등에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고유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로 장기간 주식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와 달리 일반법인은 주식투자가 고유사업이 아니므로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04.10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으므로 당분간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
 - *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개정 내용 ('04.10.5 개정)
 - 문화예술법인에 대해 문화사업준비금 신설 (소득금액의 30%)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손금한도 확대 (소득금액의 50%→100%)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한도 확대 (소득금액의 5%→8%)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이재면	2110-2174

6-4. 문화산업 특수목적회사 설립요건 완화



□ 건의 요지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명목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범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포함

□ 검토 의견

① 자본금 요건 축소

-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소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에 프로젝트금융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2001년 국회 공청회에서 환경산업 등 규모가 크지 않은 SOC사업을 위해서는 5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

** BTL 사업의 경우 투자대상이 소규모 사업임을 감안 최저자본금을 10억원으로 인하(2005.7)

- 문화산업전문회사(SPC)* 도입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고

* 설립시 최소 자본금은 1억원(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와 같음)

-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지급배당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의원입법안(이재웅의원 발의)이 제출되어 재경위 소위에 계류중(의원입법안 긍정검토)

⇒ 당해 의원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는 문제 해결

②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 법인세법상 지급배당 소득공제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등 다른 SPC와 달리 별도의 감독 기관이 없어 SPC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 SPC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 펀드운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금융기관이 당해 SPC에 5%이상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 출자자인 금융기관의 범위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자금의 여·수신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
 - * 은행법상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신탁업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 국민연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벤처기업등 특정대상에 대해 투자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 금융기관과는 차이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수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7)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무를 수행(여신전문금융업법§41)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 금융기관의 투자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SPC의 설립 및 운용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
- ⇒ 당해 의원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해결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사무관 김건영	2110-2170

<참고1> 문화산업전문회사

☐ 근거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신설)에서 규정
* 2006.2월 법사위 계류중

☐ 개념

-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

*예) 문화산업에 소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법적 형태 :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 설립시 최소자본금 : 1억원 이상

☐ 사업관리자

- 문화사업전문회사가 프로젝트 수행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 회사로서 문화사업전문회사를 대신하여 프로젝트(영화 등)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회사
- 제작관리, 감독선임, 계약의 체결, 투자자의 모집 (경우에 따라서는 완성보증인의 역할도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체

☐ 자산관리자

- 문화사업전문회사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로서 사업관리자가 임의로 자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 필요할 경우 문화사업전문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프로젝트에 대한 정산업무도 담당

☐ 회계처리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해산

-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산시 30일내 보고

<참고2> 명목회사의 최소자본금 요건

법 인	요건	최저자본금	설치근거법
투자회사	○ 상법상 주식회사	1억 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사모투자전문회사(fund)	○ 타법인주식 10%이상 투자 ○ 상법상 합자회사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fund)	○ 50%이상을 중소기업 투자 ○ 존립기간이 3년이상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약정체결기업 경영정상화 목적	5억 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유동화전문회사	○ 상법상 유한회사	1천만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70%이상 구조조정부동산투자	250억 원	부동산투자회사법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70%이상 부동산투자	250억 원	"
선박투자회사	○ 1척의 선박만 소유 ○ 존립기간 5년 이상	5천만원	선박투자회사법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	○ 금융기관 5%이상 출자	50억 원	법인세법

6-5.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 건의 요지

-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의 투자촉진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도모

□ 검토 의견

- 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 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함
-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병원채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는 외국계 영리법인에 한해 설립이 추진 중
- 향후 재경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영리법인 도입 등 자본 활성화 방안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서비스산업장관회의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신상훈	2110-2270

7-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건 의 요 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우므로
 - 승인을 신고로 변경하고, 승인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변경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가 당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당해현장에서 주로 성토·복토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현장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장소는 도심지내 이거나 인근에는 집단주거지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동 처리시설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의 발생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 동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와 불법처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선 요청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함.
- 참고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및 관리감독 의무도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법의 형평성·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환 경 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화공사무관 성 원 길	2110-6944

7-2. 연구개발설비 가동관련법규 차등적용

□ 건 의 요 지

- 현행법령은 연구개발설비 운전에 대해서도 TMS 측정자료를 상용설비와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자료로 활용
- 연구개발설비의 시험운전의 경우 행정처분 면제(개선계획서 제출 근거마련)와 배출부과금 부과 누적계수 특례마련.

□ 검토 의견 : 수용(기 시행중)

○ 행정처분 면제

- 연구개발설비의 성능시험 기간 중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 개선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인정
- 개선기간중의 초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 배출부과금 부과 누적계수 특례

- 자체개선계획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를 제출하고 운전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 이미 제도화 되어 운영중인 사항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환 경 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환경사무관 이 윤 택	2110-6789

7-3.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입법 재검토

□ 건 의 요 지

- 제도 도입시 과대한 행정수요 및 비용부담 유발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유발
 - 제작사 및 소비자 재활용부담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통상마찰 우려(재활용부담금 규모 8,000억원)
- 제도로도입이전에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EU 등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율 준수와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등에 대한 법률 시행
 -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관리법('06. 7) 등
-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수입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법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책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미흡한 수준
- 자원순환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함량 등에 대한 공표가 아니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규정 등을 준수하였음을 선언하고 선언내용을 A4용지 1-2장 분량을 공표토록 할 계획임
 - 유해물질의 함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현행과 같이 기업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행정비용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
- 산업계와 동 법률안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동법 제정으로 산업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환 경 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환경사무관 이 재 영	2110-6953

7-4. 배출시설 신고의무 개선



□ 건의 요지

- 대기배출시설 설치시마다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일 종류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체 방지시설의 용량이 일정비율 늘어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에 대하여도 허가받은 동일 종류의 배출시설이 일정비율 늘어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 검토 의견 : 수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 폐쇄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 배출시설설치허가에 있어서도 변경허가 대상 이외의 시설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기계·기구 등 개별 배출시설 하나하나의 변경 시 마다 변경허가 또는 신고토록 하는 현행 배출시설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일련의 단위공정시설에 대하여 인·허가토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일련의 단위공정시설로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당해 공정내 기계·기구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가 불필요하게 되고 단위공정전체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고가 필요하게 되어 변경신고 업무가 지금보다 현저(1/10 수준정도)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환 경 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환경주사 김 광 석	2110-6790

7-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기간 단축

□ 건의 요지

-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현장조사 대신 기존 환경 자료 활용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환경평가관리 강화로 대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려 사항을 평가서 작성시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보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현장조사 대신 기존 환경 자료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환경평가관리 강화로 대체하는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의 목적이나 한계, 사후환경조사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수용불가
 - 계절별 조사는 지역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대상(사업, 지역)은 제외할 수 있거나, 기존 조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그러나, 평가서 부실작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은 계절별 조사 시스템 유지하되,
 - 일반사업중 환경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닌 경우는 환경측정망 운영결과, 조류센서스 등 문헌이나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별 조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려 사항을 평가서 작성시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화공사무관 김재석	02-2110-6718

8-1. 국도38번 조기 완공 지원

□ 건의요지

- 국도 38호선 대산-가곡 조기확장
 - 대산석유화학단지내 60여개사에서 매일 1천여대의 대형 트럭이 노퍽이 협소한 지방도(2차로)를 이용중으로 수송 지연(물류비 증가) 및 사고위험이 상존

□ 검토의견 : 적극 노력

- 국도38호선 대산-가곡구간은 '01.5월 감사원 감사시, 석문 국가산업단지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사업착수가 보류됨

* 석문산업단지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석문·고대면 일원(석문간척지내) 366만평
 - 석문간척지 : 농업기반공사 시행(1,125만평)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92~'08, 1조 1,197억원(시행자 : 토공)

**국도 38호선 대산-가곡 구간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 연 장 : 25.2km(4차로)
- 사업비: 3,739억원(사설비: 3,545, 보상비: 194), - 실시설계 : '01~'02

- 이후, '04.12 석문산단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공사)되어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 * '06년 상반기중 개발계획 변경예정

- 본 구간의 경우, '06년 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비 예산 20억원이 반영되었으므로 금년 선보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 감사원 지적으로 보류된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후 선보상 시행계획

8-2. 대규모 유통점포 출점 규제 완화



□ 건의 요지

- 대규모 유통점포 규제 중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가 지연, 조속한 시행을 요청
- 계획관리지역 입점 허용, 자연녹지의 개발행위 허가면적 상한을 3만㎡까지 확대,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 통합 운영

□ 검토 의견

- 규제개혁기획단은 인·허가 절차 및 입지조건 등의 완화를 통한 대규모 유통점포의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 '04년 12월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의제처리 범위 확대(축산물 판매업 신고, 주류 판매업 신고, 약국 개설 등록 등), 국유재산 매각 승인절차 간소화(재경부→지자체), 경품한도액 상향조정(100만원→500만원) 등 24개의 규제를 완화하였음
-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운영」을 위한 건축법 및 환경·교통및재해영향평가법 개정안은 '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이며,
 - 「계획관리지역 입점」 및 「자연녹지 개발 면적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일부 이견 조정을 위해 당초 계획('05.12월)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06.3월까지 완료키로 하였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정철현	2100-8807

8-3.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유통기업부담 최소화

□ 건의요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유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낮춰줄 것을 건의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예상(시행령 제정시 검토)

-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 * 의원입법(정장선 의원외 143인)으로 국회에 제출('05.9.30)되어 본회의 의결(12.30)후 공포('06.1.11)되었으며, '06.7.12 시행 예정
 - 현재, 대부분 건축행위는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담이 없는 실정
 -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수익·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
- 향후 시행령 제정시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결정되도록 할 예정임
 - 다만, 특정업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낮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8-4. 유통기업의 전기요금 산업용 적용

□ 건의 요지

- 유통매장은 제조업체 공장과는 다른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아 부담이 크므로,
- 유통매장의 전기요율을 산업용으로 전환하여 제조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 검토 의견 : 수용 불가

-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6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음
 - 산업용 요금은 광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유통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되어 일반용 요금 적용대상임
- 유통업종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일반용 판매량의 약 25%가 산업용으로 전환되어 용도별 요금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며,
 - 다른 일반용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켜 IT, 물류 등 각종 유사 전기소비자들의 산업용 요금으로의 변경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짐
- 유통업종의 산업용 요금 적용에 따른 경감액(약 8,000억원)은 전기요금 인상요인('05년 기준 약 3.2%)으로 작용하여 타용도(서민주택용, 일반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용이 불가

- 산자부는 이러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방향을 확정('02.12월)하여
 - 적정판매단가 수준보다 높은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인하하고, 적정판매단가 수준보다 낮은 산업용, 가로등 요금은 인상하여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시켜 나가고 있으므로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은 줄어들 것임
 - '03.1.1 산업용 2.5% 인상, 일반용 2.0% 인하
 - '04.3.1 산업용 동결, 일반용 3.5% 인하
 - '05.12.28 산업용 2.4% 인상, 일반용 1.9% 인상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박태현	02-2110-5544

8-5. 개발제한구역내 택배터미널 건축 허용

□ 건 의 요 지

고지가로 인하여 택배업체들이 도심지역내 1천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외곽지역인 개발제한 구역내 택배터미널 건축을 허용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현 황 >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관리되고 있음(71년부터 8차에 걸쳐 지정)
- 이에 따라 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시설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하고 있음

※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시설(법 제11조제1항 단서)

- 1) 구역통과가 불가피한 도로·철도 등 선형시설
 - 2) 구역주민의 생업을 위한 농·수산업시설 및 편의시설
 - 3) 환경친화적인 공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4)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등 **181개** 시설물
- 불가피하게 입지가 허용된 시설이라도 시설의 규모, 입지기준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구역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건의내용 수용시 문제점 >

가. 구역관리 측면

- 개발제한구역에 택배터미널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99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GB관리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 될 뿐 아니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에 따른 **구역훼손 우려**

-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각종 시설의 허가 남발 우려

- 50여만의 구역주민의 경우 각종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등 집단민원 분출 우려**

※ 건축제한(단독주택의 경우 3층이하, 200㎡로 제한 등), 토지의 형질변경제한 등

나. 여타시설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 지가차이를 이용하여 구역안 입지하려는 여타 시설들이 형평성 시비로 인해 연쇄적 설치 요구(택배터미널 시설 건축의 건의도 도심지의 높은 地價를 이유로 입지를 요구)

- 특히, 최근 각 분야·단체에서 약 **19만 여개의 시설**에 대하여 **구역내 입지를 요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06년 임시국회에서 GB내 각종 시설입지(노인복지시설, 대학, 종교 시설 등)를 위한 의원입법이 제안되는 등 훼손압력 증가 추세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요구 시설현황

· 노인복지시설 등	: 5만 여개
· 종교시설(사찰, 교회 등)	: 9만 여개
· 건설기계주기장	: 32만 여대
· 택시차고지, 물류기지, 터미널 등	: 28여 만대(개)
· 국방, 군사시설	: 3만 여개
· 교정시설	: 46개소
· 학교시설	: 1만 여개
· 공공도서관, 공공청사 등	: 7백 여개

다. 언론·국민여론 측면

○ 사회각계의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보전관리’ 요구에
역행

- 허가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에 따른 구역
훼손 가속화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05.12.8 건설교통부 NGO 정책자문회의시 각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역내 무분별한 시설입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개발
제한구역 관리 정책방향 제시를 요구

□ 결 론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입지 등의 요구에 대하여
case by case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요구
분출, 집단행동 등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며 제도자체
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것으로

○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

8-6. 물류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책 다양화

□ 건의 요지

- 민간기업의 물류관련 시설투자시 막대한 투자금액 소요
 - 시중은행에서 차입시 금리부담
- 제조업에 준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연리 3.3%)지원

□ 검토 의견 : 기 지원중

- 산업은행은 특별펀드를 통하여 우선공급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물류관련산업에 대한 지원도 '04년도부터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펀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특별펀드명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펀드」
 - 지원규모 : 5,000억원
 - 대상 :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유통·물류, 정보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 우대지원
 - 대출금리 : 대기업 △0.3%P, 중소기업 △0.7%P
 -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90%이내(일반대출 80%이내)

※ 지원 실적

- '05년 : 175개 업체 14,630억원
(시설 8,102억원, 운영 2,011억원, 사채인수 4,332억원, 기금 185억원)
- '06년 (2/22일 현재) : 18개 업체 1,050억원
(시설 526억원, 운영 219억원, 사채인수 290억원, 기금 15억원)

8-7. 물류센터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 건의 요지

- 유통산업의 기반 시설인 물류센터 및 물류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해 공장용지와 같은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건의

□ 검토 의견 : 수용불가

- 토지에 대한 재산과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 원칙적으로 종합합산(0.2~4%), 영업용·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0.2~1.6%), 산업단지내 공장 및 물류용지는 분리과세(0.2%)
 -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 분리과세 기 전환함('05.1.5시행)
 - ※ '04.3.19. 경제장관간담회 및 '04.12.7 청와대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
- 물류센터등 물류시설용 토지는 영업용·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하여야 하나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합산 하고 있음
 - ※ 공시지가 200억원인 물류시설용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시 2억 8,825만원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나 별도합산하여 5,480만원의 세부담을 함(종합합산에 비해 81%정도의 경감효과)
 - 물류시설용지 분리과세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분리과세하는 공장 및 별도합산하는 영업용 토지와 불형평 초래
- 따라서 별도합산으로 규정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전환은 수용 불가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이창남	02-2100-3922

8-8. SOC 및 물류시설 투자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

□ 건의 요지

- SOC 및 물류시설 투자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운용에 따라 국내기업이 경쟁에서 불리
-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투기업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 검토 의견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운영*은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 등 국제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투자환경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등 : 5년(3년)간 100%, 2년간 50%

* 중 국 : 경제특구내 외투기업 5년간 감면, 15% 경감세율 적용

- '05년부터는 조세감면 범위를 축소*한 바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규감면제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7년 100%, 3년 50% → 5년 100%, 2년 50% 법인세 감면

- 향후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효과와 주변 경쟁국의 감면제도 변화추이 등을 보아가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9-1.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 재도입

□ 건의 요지

- 대기업을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 재도입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97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도 도입하였으나
 - *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감면실적이 미미하고 지원의 실효성이 적어 '02년에 폐지
 - '97년부터 '02년까지(6년) 손금산입액 : 3개 업체 31백만원
 - * 감면세액으로는 1천만원에 불과
-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제도를 일부 업체의 실적을 근거로 재도입하는 것은 곤란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9-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 및 세액공제 동시 적용 허용

□ 건의 요지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 적립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동시 적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인력개발설비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함
- 중복적용을 허용할 경우 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인정한 후 지출시에는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동일비용에 대하여 이중의 세제지원을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 또한, '97년도 세법개정시에는 중복지원되는 제도는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하여 '98.1.1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적용을 배제하여 운용하고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9-3-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중기청)



□ 건의 요지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대기업 및 해외자본에 의한 M&A 확대
- 벤처캐피탈 투자주식 손금인정 범위 확대(재경부 검토)

□ 검토 의견 : 수용

< 창업 기업 투자 확대 >

- 창업기업 투자조합(펀드금액의 60%이상 창업 3년미만 투자) 등 정책적 지원 분야에 당해연도 모태조합 출자가능금액의 **15%이상 의무 출자**(’06년부터 시행)
- 모태펀드 출자시 창업기업 전문투자 조합을 일반조합에 비해 우대하여 창업기업 투자촉진을 유도

구분	일반조합	창업기업 투자조합
심사가점	가점없음	가점부여(6점)
모태조합 출자비율	30%	50%
창투자 관리보수	2.5%	3%
수익배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모태조합 배분 수익의 일부를 타 조합원에게 배분가능

* 현재 우리나라 창투사의 초기기업 투자비율은 미국보다 높음

▪창업3년 이내 기업 투자비중 : (한국, '05년말) 26.5%, (미국, '05.9) 19.4%)

<대기업 및 해외자본에 의한 M&A 확대>

-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 벤처법 개정('04.1) : 벤처기업 주식교환 대상 확대(벤처기업 상호 간에서 일반기업의 대주주를 추가), 부분적 주식교환 특례 도입 등을 규정
- 특히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총액한도 적용 배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30%미만→50%미만 : '05.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향후에도 벤처기업의 M&A 촉진을 위해 벤처법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나겠음

<투자기관의 피투자기업 경영 지원기능 제공>

- 최근 창투사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벤처 캐피털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또는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05.10)
- 모태펀드의 사모펀드(PEF)에 대한 출자를 허용('05.4 벤처법 개정)하고 있어 바이아웃(buyout), 메자닌(mezzanine) 펀드 형식의 투자가 가능한 상황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중기청	창업벤처국	이현조	042-481-4387

9-3-②.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 건의 요지

-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주식의 손금인정 범위를 완화하여
 - 주식발행법인이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휴면 상태」인 경우 당해 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발행법인이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
 - 주식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보아 당해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정
- 건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휴면상태」는 객관적 요건인 부도·파산*과는 달리 불확정 개념 요건으로
 - * 부도 : 금융기관 확인, 파산 : 법원 선고
 - 요건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워 적용과정에서 납세마찰이 예상되며, 감액손실을 과다계상하여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소지
- 휴면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예) 부동산·고가 기계장치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사업을 휴면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주식에 대하여 감액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손실 인식 가능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사무관 김건영	2110-2170

10-1.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의 일몰제 적용 폐지

□ 건 의 요 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일몰적용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운용하거나 5년 주기의 일몰제를 운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제 운영은 감면제도가 항구화되어 기득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마다 감면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경제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감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
-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감면제도이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일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10-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건의 요지 :

-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현재도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준비·투자·비용지출단계별로 연간 1.3조원 수준의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중

* OECD(2002, Warda) : 우리나라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세계6위 수준

- 대기업에 대해 당기분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 R&D 투자 확대라는 정책효과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만 초래

※ 세수감소 효과 : 당기분 5% 세액공제 : △4,000억원
(당기분 1% 세액공제 당 △800억원)

- 실제 대기업 당기분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폐지한 '00년후에도 대기업의 R&D 투자는 줄어들지 않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R&D투자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대 기 업	6.8 (86)	7.2 (86)	8.1 (79)	8.7 (71)	9.3 (72)	11.0 (77)
중소기업	1.0 (14)	1.2 (14)	2.1 (21)	3.5 (29)	3.6 (28)	3.4 (23)
합 계	7.9	8.4	10.2	12.2	12.9	14.4

○ 현행 R&D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이 국제 기준임

* OECD(tax incentives for R&D, 2002)

- 당기지출분 세액공제는 사전적 인센티브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사후적 · 결과적 조세감면만 초래

* 증가분 공제제도 : 미국, 프랑스, 호주, 대만, 중국 등

소관부처	소관국 · 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10-3.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범위 확대

□ 건의 요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전담건물의 신축, 증축, 설치 및 구입관련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
- 건물은 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세액공제 허용하는 경우 세수감 효과만 커질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2110-2152

10-4. 산업기반자금 및 산업기술개발 자금 예산 증액

□ 건의 요지

- 산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분야) 및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

□ 검토 의견 : 수용

< 산기반 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분야) >

○ '06년 산기반자금 중 부품소재 지원금액은 732억원

- 이는 '06년 산기반자금 지원규모(3,152억원)의 약 1/4로서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7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할당
- 정부 예산의 특성상, 금년도 지원규모는 작년말 국회에서 확정되어 사실상 금년도 지원규모의 증액은 곤란한 상황

○ 다만, 상반기 이후 자금집행이 부진사업을 파악하여 미집행자금을 부품·소재 분야에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 * '04년의 경우, 부품소재 분야 연초 지원규모는 650억원이었으나, 상반기 이후 집행이 집행부진 사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05년 말까지 부품소재 산업에 1,126억원의 자금을 지원

○ 또한, 금년도에 편성하는 '07년도 산업기반자금(중산기금) 중 부품소재분야의 지원규모를 금년보다 증액하여 요구계획

- * '07년 부품소재분야 지원규모를 900억원을 예산처로 요구
(중기재정계획상 산기반자금 요구규모 : '07년 3,773억원)

< 산업기술개발자금 >

- '06년도 산업기술개발자금은 500억원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추진 중
- 산업기술개발자금은 매년도 예산이 사실상 년내에 전액 소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충분한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체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예산처 등 예산당국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중자금의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재원조달이 조금은 원활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동 자금을 포함한 융자 정책자금들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서
 -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한 정책사업에 집중시킬 수 밖에 없는 정부의 현실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부는 기술개발융자예산 축소 추세를 보완하기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향후 정부재정이 허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산업기술개발자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산업개발과	엄혜선 오재순	2110-5163

<참고> : 산업기술개발자금 개요

□ 사업목적

-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통해 무역수지의 개선과 산업구조 선진화 촉진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의한 신규고용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 * 근거법령 : 산업발전법 제 25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부터 지원('05년까지 28,333억원 지원)
- 사업규모 : '05년 134여 과제 지원('05년까지 10,189개 과제 완료)
- 지원조건 : 연리 5.06%('06.1/4분기, 분기변동), 융자기간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과제당 소요자금의 80% 이내, 과제당 30억원까지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재원마련, 금리결정, 자금융자 및 회수
 - 산업자원부 : 취급기관 조정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 취급기관 : 융자대상자 선정 및 추천
- * '05년 취급기관 : 기계산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정밀화학공업진흥회, 디자인진흥원, 발명진흥회, 금형공업협동조합 등 6개기관

□ 연도별 예산 및 집행실적

- 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03년부터 지속적인 축소 추진
 - '07년에는 동결 내지 소액 축소 방침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비고
예산	2,000	2,000	1,600	1,200	1,000	500	500요 구	
실대출	2,000	1,992	1,562	1,200	1,000			
전수	338	206	153,	132	134			

10-5. 부품·소재 핵심 생산설비 기술개발자금 지원

□ 건의 요지

-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핵심생산설비를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도 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지원

□ 검토 의견 : 수용

- 정부는 '01년 2월에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부품·소재 기술개발, 기반구축, 종합기술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기술개발의 경우 '00~'05년까지 총 412과제에 6,309억원을 지원하여 정부지원대비 매출액 5.46배 향상, KOSDAQ에 18개 및 NASDAQ에 1개 기업이 상장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함
- * 사업예산(억원) : ('04) 1,328 → ('05) 1,600 → ('06) 1,800
- 한편, '04년 12월 부품·소재특별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부품·소재에 국한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설비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현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단체가 실시중인 “부품소재 생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3월에 지원대상 설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자본재산업총괄과	이상준 사무관	02)2110-5613

10-6-①. 콤비나트 고도통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 건 의 요 지

-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콤비나트 고도통합 기술개발사업(Combinat Technology Project)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요청

* 콤비나트 고도통합 기술개발사업(CT Project)은 석유화학단지 내 정유·석유화학사간 부산물의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 자금지원 요청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준비단계	1단계('07~'09)	2단계('10~'12)	계
금 액	정부지원금	120	30,000	35,000	65,120
	민간투자금	80	20,000	20,000	105,200
	총계	200	50,000	55,000	105,200

* 일본(르네상스 프로젝트)은 콤비나트 전체의 인프라구축에서부터 부산물 활용까지를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 사업을 시행한 예가 있음

□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 원료의 전량수입, 중동의 생산능력 증대 등으로 국내외의 경쟁 격화가 예상되어 공정기술 향상, 원가절감 등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공감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틸렌 기준)의 생산규모와 생산의 50% 이상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

-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별도 신규 예산지원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석유화학단지의 업체간 공동배관망 구축과 부산물의 활용 기술개발 등 업계간에 제휴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술개발 사업 등은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기초소재산업과	정광세	2110-5646

10-6-②. 대체 원료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 요청

□ 건의 요지

- 천연가스, 석탄, 천연물 등 석유 대체원료를 활용하여 석유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요청

□ 검토 의견 : 수 용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신소재 개발과 새로운 공정기술 등 중장기(중기·차세대)기술개발 과제(5~7년)를 旣 지원 중
 - * '05년 석유화학업체(호남석유화학, LG화학 등)가 참여한 『폴리올레핀 신소재 및 제조공정 개발』 등 중장기기술개발 과제를 旣 지원(7개 과제, 140억원)
- '06년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대상과제로 『납사 대체원료(천연가스 중 메탄)로부터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을 선정
 - 동 과제는 현재 연구기획('06.1.1~3.31)중에 있으며, 최종전문가 평가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지원 대상과제로 확정 예정
 - * '05년 『천연가스(메탄기반) 올레핀 전환기술 개발』에 대해 산업기술 동향 분석을 실시('05.11. 산업기술평가원 주관)
- 석유화학의 주원료인 납사 이외에 메탄, 석탄 등 대체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체제 구축 등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기초소재산업과	김열규	2110-5644

11-1. 기업도시 접근도로 건설 지원

□ 건의요지

기업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개발구역 밖의 항만, 철도, 도로 등 광역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정 조항 신설

□ 검토의견 : 기규정(세부사항은 적극 검토)

-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재원의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대여 가능하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구체적 지원범위·방식 등에 대하여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국토연구원, '05.12.9~'06.10.8)을 시행중에 있으며, '06.하반기중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지원기준을 마련·운용할 계획
- 국고지원 기본원칙, 절차 및 지원시기, 기업도시 기반시설 범위, 지원비율 등 검토 중

11-2. 기업도시개발 출자금의 출총제한적용제외 범위확대

□ 건의요지

- 기업도시 건설 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업의 지배목적이나 사업다각화가 아닌 순수한 출자이기 때문에,
 - 기반시설 투자비용 상당액뿐만 아니라 출자지분 전체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검토의견 : 적극 검토(공정위 소관)

- 동 사안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관련제도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마련('04년)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자지분 전체에 대한 예외 적용에 반대

11-3.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허용

□ 건의요지

현재 기업도시내 전문대학 이상만 설립 허용되는 외국
교육기관을 초·중등으로까지 확대

□ 검토의견 : 적극 검토(교육부 소관)

- 동 사안은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
부의 정책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마련('04년)시 외국 초·중등교육기관
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가 반대

11-4.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20%이상 확보시점 연기

□ 건의요지

- 사업시행자는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개발계획 승인시까지 확보하여야 하나,
 - 초기 자금부담이 되며 자금이 1년 이상 묶이므로 이를 실시 계획 승인시까지로 연기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현행 제도는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기업도시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서 변경 곤란
 - 재원조달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한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의 이행불능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업도시사업 전반에 막대한 차질 초래
- * 개발계획 승인시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이 되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며, 개발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되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적어도 개발계획 승인시까지 확보토록 할 필요
- * 도시조성비 20%의 1/2은 금융기관 대출확약으로 대체가능

11-5. 등록체육시설과 숙박 및 주거시설 설치 허용

□ 건의요지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문광부 소관)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주거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 검토의견 : 기반영

- 체육시설에 숙박 및 주거시설은 실시계획에 반영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반영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9조제4항 : 개발구역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동 사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이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1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건의 요지

-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 상향, 외투기업 예외인정 기한 폐지, SOC 적용제외 확대, 지배구조 모범 졸업기준 완화, 괴리도·승수 졸업기준 완화, 공적자금 투입회사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추가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 검토 의견

- 올해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마지막 해로서 이를 착실히 마무리 할 것임
 - 따라서 동 로드맵에 따라 '04년말에 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출총제도의 기본 틀을 고칠 계획은 없음
 - 다만, 출총제 졸업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출총 졸업기준 등에 대해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 아울러 동 의견을 바탕으로 출총제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 여부도 검토할 계획임
- ※ 지난 2.10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구조조정본부장들을 만나 출총제 졸업을 적극 독려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팀	선중규	503-9124

13-1. 섬유산업 구조혁신 지원 등



□ 건의 요지

- 섬유구조혁신특별법(안) 입법 추진 지원
- 섬유산업에 대한 대출 및 신용 보증 확대
- 섬유산업 수출활로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역별 마케팅 지원(예: 해외전시회)

□ 검토 의견

<섬유구조혁신특별법(안) 입법 추진 지원 : 검토>

-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그간 개별산업 지원법 제정 등에 따른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가능성, WTO 보조금 협정과의 합치여부, 법제정의 실익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음
- 이와 아울러 섬유특별법 내·용 및 업계 당면 애로를 중심으로 섬유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 '06.4월 국회상정 예정으로 정부입장 마련 계획

<섬유산업에 대한 대출 및 신용 보증 확대 : 수용>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신용보증 활용 확대
 -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 수출기업이 물품 제조, 가공,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
 - 수출용 자금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 이외에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 활용
 - * 수출실적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부여, 특히 1.5억원 이내 소액보증 신청기업에 대해 타보증기관의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지원

- 섬유업계 이용률이 낮은 선전적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활용 제고를 통해 신용보증 축소에 따른 애로를 일정수준 경감

* 대구·경북 수출 직물·염색업계의 선전적 신용보증제도 활용현황 ('05.12, 업체수 기준) : 직물 18.9%, 염색 5.1%,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기업 특례보증시한을 '05년말에서 '06년말로 연장(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총 3조원 지원계획)
- 금년 3월중 섬유집적지를 중심으로 '수출신용보증기금 및 정부 정책융자자금 설명회' 개최(수보·중진공과 공동 실시)

< 섬유산업 수출활로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역별 마케팅 지원(예: 해외전시회) : 수용>

- 현재 산자부에서는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단체참가시에는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직접경비 50%이내(한도: 업체당 1,50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개별참가시에는 임차료 100%이내(한도: 업체당 1,000만원), 상·하반기 각 1회씩(연간 2회)으로 지원 횟수 제한

* 2006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사업 선정내역 (*비중은 금액대비)

구분	계	기계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정보통신	기타
지원수(개)	122	30	29	19	22	9	13
지원금(백만원)	8,100	1,761	1,764	2,016	1,522	458	579
비중(%)	100.0	21.7	21.8	24.9	18.8	5.7	7.1

- 보다 많은 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있도록 향후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	손정아 주무관	2110-5653

13-2.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 전의 요지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이전 촉진

□ 검토 의견 : 수용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사업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필요
 - *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을 : 14.3%('02년) → 18.5%('05년)
- 우선적으로 전국의 기술이전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금년중 대학·연구소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TLO)를 선발(4대 권역별 총 25개 내외)하여 집중지원
 - * 4대 권역 : ①수도권(서울·경기·인천) ②중부권(충청·강원) ③서남권(전라·광주·제주) ④동남권(경상·부산·대구·울산)
 - 테크노파크(TP)내 기술이전센터(RTTC)를 지역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발전
- 또한, 특허경비 및 전문가 파견 지원, 공공기관의 미활용 기술 발굴·이전 등 기술이전 활동을 지원하고,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자체규정 도입, 기술이전 우수 연구자·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을 추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	김용태사무관	2110-5398

13-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개선

□ 건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인하
 - 수도권 4%, 기타 대도시권 2%인 현행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율을 지역 구분없이 2%로 단일화

*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 - 공제액

** 평균적으로 사업비의 4~5%임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현재 국가적으로 시급한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광역도로 31개 사업 115.8km, 광역철도 10개 구간 286.5km를 건설중
 -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12조 2,195억원(연간 1조2천억원) 소요되나, 재정한계로 약 5천억원 투자 실정
- 재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530억원), 교통세(3,752억원)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국고 소요금액(4,932억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05년 650억원)을 받고 있는 실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시 시설 확충에 큰 차질 우려
- 광역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이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도 타 지방대도시권과 차별 필요
- *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경기도)의 경우도 세출(936억원)에 비해 세입(광역부담금 721억원)이 크게 부족(251억원)

13-4. 해외자원개발 투자지원 확대

□ 건의 요지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성공불 용자 및 일 반응자) 규모가 작고, 세제상 지원(세액공제 3%) 미흡

□ 검토 의견 : 수용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위축 되었기 때문임
- 특히 성공불 용자의 경우 '05년 지원실적이 8.5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그만큼 성공불용자에 대한 수요가 적었기 때문임

* '05년 해외자원개발 용자금(650억원) 지원실적

- 탐사 107억원(성공불용자 8.5억원), 개발 120억원, 운영 205억원, 구매 218억원

- 그러나 최근 들어 자원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도 이에 맞추어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앞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제 폭을 확대해 나가겠음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국 자원협력팀	황의덕	2110-5435

13-5. LNG복합발전소 용량요금(CP) 상향조정

□ 건의 요지

- 현행 전력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기 건설투자비를 보상하기 위한 용량요금 지급
- LNG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투자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1/2이나 지급받는 용량요금은 1/3에 불과

	건설단가(천원/kw)	용량요금(원/kw)
석탄화력	1,183	20.49
LNG복합	580	7.17

- 과거 5년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되지 않아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용량요금을 현실화할 필요

□ 현행 용량요금 체계

- 전력시장에서 용량요금은 설비용량 및 사용연료의 대표성을 갖춘 표준발전기의 건설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현재 표준발전기는 일반시장에서는 가스터빈발전기, 기저시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기가 선정되어 있음
- * 일반시장 : 중유·가스터빈·LNG복합·수력·양수발전기의 전력공급시장
- * 기저시장 : 원자력·석탄화력발전기의 전력공급시장

□ 검토의견

- 현재, 표준발전기의 건설투자비 산정시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이자율·환율 등 여타 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만일, 표준발전기를 LNG복합화력발전기로 변경할 경우, 용량요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는 소비자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케하는 요인이 됨
 - * 현재 용량요금 7.17원/kw에서 12원/kw정도로 67% 증가
- 또한, 용량요금 증가는 LNG복합발전기의 투자에 대한 강한 유인효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전원(電源)구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현재 우리나라는 기저발전설비 추가투자 필요(기저발전용량 비중 59%)
- 따라서, 현재 우리 전력산업의 여건상 LNG복합화력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과장(담당자)	연락처
산업자원부	전기위 전력시장과	장홍순(이건호)	2110-5523

13-6. 조선소 입지난 해소

□ 건의요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 소정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 다른 실수요자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서 이용토록 개선

□ 검토의견 : 개선 추진중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현행규정이 임의규정이고, 개발사업의 착수 및 완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금번 산업법 개정시 동조항을 의무규정화하고,
 - 시행령 개정 시 다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할 예정임

13-7. 환경·안전 관련 분산된 감독기관과 중복된 규제 및 관리

□ 건의 요지

- 업무 점검 및 행정지도를 위해 연간 약 40여회씩 기업을 방문, 이에 따른 기업 손실 및 형식적인 대응 발생
- 분산된 행정지도 등의 종합·일원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유사기관 통폐합, 유관기관 통합지도·점검 등 요망

□ 검토 의견 : 수용

- 행정의 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 등에 대한 각종 행정조사를 도입·수시운영
- 포괄적인 조사요건, 절차규정의 미비, 중복조사 등으로 인해 행정조사가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작용
- ※ 단순 실태조사, 법령위반 확인 등을 위해 건교부·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 총176개의 행정조사를 실시
- 이에 따라 정부는 '04.12월 국무총리주재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행정조사개선방안”을 확정
- 행정조사요건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정비가 시급한 49개 법률은 행정조사 관련조항을 개정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
- ※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49개 법률('06.2.24 현재 19개 법률 개정완료)
- 이와 함께 행정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을 추진중('07.1.1 시행 목표)
- 행정조사의 최소화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공동조사 실시 (동일대상자에게 동일·유사한 행정조사 실시하는 경우) 및 요구권,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조사 제한, 조사의 연기·기피 신청, 조사요건의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행정조사관련 법률 개정” 작업과 「행정조사기본법」이 시행되면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공동조사의 실시, 중복조사의 제한 등을 통해,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조사가 실시되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 및 행정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 중복조사가 많은 『유해·위험물질 관리분야』와 『식품안전 관리분야』에서 공동조사가 실시될 경우 연간 약850억원 이상 수검비용 절감 예상

<참고> 환경·안전 분야의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방안

- ‘04. 9월부터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기점검을 면제
- ‘05. 12월부터 동일 사업장에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여러 배출시설에 대한 동시 지도·점검을 위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을 통해 각각 관리되는 유해위험물질의 통일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제적인 분류표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표시 마련을 추진(‘07년)

소관부처	소관국·과	담당자	연락처
국무조정실	규제1심의관실	이영호	2100-242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김고응	2100-8755
환경부	감사관실	강선종	2110-6539